

제411회 임시회
'23. 9. 8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8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2년 8월 30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기·문장(철인)·휘장·심벌마크 등 주요 상징물의 교체와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,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따른 관련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·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 - 「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」
- 상징물의 교체에 따른 사항 반영(안 제3조)
 - 도기: 별표 1 / 문장(철인)·휘장: 별표 2 / 심벌마크: 별표 3
- 충청북도 상징물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 노력 규정(안 제6조)
-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- 휘장 증여대장 및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 서식 정비
(안 별지 제1호서식~별지 제3호서식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
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 및 제12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개정안은 새롭게 변경될 충청북도 상징마크(CI)를 조례에 규정된 도기·문장(철인)·휘장·심벌마크 등 주요 상징물에 반영하고, 현행 ‘상징물관리위원회’를 ‘브랜드위원회’로 변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심벌마크를 추가하였고, 별표3은 심벌마크와 그 의미, 색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.
 - 심벌마크는 도기나 문장, 휘장 등과 같은 상징물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이 반영된 대표적 이미지로, 조례에 명시할 경우 다른 상징물보다 우선하여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
- 안 제10조는 현행 ‘상징물관리위원회’를 ‘브랜드위원회’로 변경하여 설치·운영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 - ‘상징물’은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심벌마크, 도기, 문장 등을 의미하며, 공공영역에서의 ‘브랜드’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충청북도만의 역사적 특성, 문화적 자산, 자연환경 등을 인식하게 하는 유·무형자산이라 정의할 수 있으므로 상징물과 브랜드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짐.
 -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‘상징물관리위원회’를 ‘브랜드위원회’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현행 ‘상징물관리위원회’를 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심벌마크를 기본으로 충청북도의 정체성인 상징을 담았고 이를 토대로 ‘깃발, 문장’ 형태 등으로 변경하는바, 심벌마크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.
- 또한 본 조례의 목적이 상징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상징물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브랜드화하는 것은 정책집행 상 필요하다 할지라도 본래의 기능인 ‘상징물관리위원회’를 ‘브랜드관리위원회’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.
- 최근 지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. 이에 충청북도의 브랜드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고유 브랜드 개발, 관리, 활용,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